# Ⅲ 특수차량(경운기, 리어커포함)의 사고

편 집 : 손해사정사 박성정[1)]
소 속 : 손해사정법인 가나

### 1) 특수차량의 특수장치 조작중 사고

| 판결요지 | 피해자 과실 | 사건번호 |
|---|---|---|
| 타이어식 크레인으로 지상의 패널을 건물2층 발코니에서 있는 비계공인 피해자에게 올려 주다가 위 크레인의 붐대를 너무 세차게 회전 조작하여 붐대에 매달린 패널이 신축건물의 벽에 부딪고 반동으로 튀어 나와 피해자가 2층 아래로 떠밀려 떨어짐. | 20% | 서울고법 86나2872 |
| 도로 재포장기(아스팔트 휘니셔, 리믹서), 피고는 20km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60km로 가속 진행하여 그 앞에서 뒷걸음질하면서 아스콘 찌꺼기 제거 작업 중이던 원고 충격. 원고과실 | 20% | 서울고법 87나441 |

### 2) 경운기(리어커)사고

| 판결요지 | 피해자 과실 | 사건번호 |
|---|---|---|
| 오전(08:00)에 편도2차선 도로중 1차선상을 주행하던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동일방향의 선행경운기를 추돌한 사고에서, 경운기에 도로 가장자리로 가지 않고 2차선 중앙으로 진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10%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| 10% | 부산지법 울산지원 94가단2809 |
| 오후(18:40)에 차량이 선행하던 경운기 뒷부분을 추돌하여 경운기 뒤이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이 부상한 사고에 대해, 탑승인에게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한 사실에 근거하여 15%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| 15% | 대구지법 안동지원 92가단4208 |
| 우천중인 야간에 도로옆에 비포장부분이 있는 편도1차선의 지방국도상을 운행하던 경운기가 트럭에 의해 충격된 경우에, 가해트럭이 반대차선의 차량불빛으로 인해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| 20% | 서울고법 88나3330 |

1)경력20년의 손해사정사, 교통사고감정사
(前) PNS손해사정법인, (前) PNS법과학기술연구소, (前) 교통방송 및 보험신보 기고,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문위원
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 전공(석사) "논문 :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(판례중심)"

| | | |
|---|---|---|
| 20%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| | |
| 야간(21:00)에 편도1차선 도로에 이르러 60km로 진행하던 차량이 선행하던 경운기가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려고 정차하여 대기하여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경운기를 추돌한 사고에서, 경운기의 좌회전금지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30%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| 30% | 서울민사지법 93나26402 |
| 50km로 주행하던 버스(피고)와 경운기(원고)가 원고 진행차선에서 충돌한 사고로, 원고가 반대차선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피고가 보고 이를 피하려고 반대차선으로 들어가자 원고가 그제서야 자기차선으로 들어가다가 충돌한 사고에서, 경운기 운전자에게 60%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| 60% | 서울고법 87나2773) |
| 야간(18:09), 편도1차선 국도상의 중앙부분을 진행중인 전방의 경운기(야광판 미착)의 후미를 대향 차량의 불빛때문에 53km로 진행하는 차량이 추돌하여 경운기 운전자 사망, 적재함에 탑승한 경운기 운전자의 모친이 부상한 사안. 경운기 운전자 과실 15%, 적재함탑승인과실 20% 인정 | 20% | 서울지법 9 4 가 합 10882 |
| 야간(20:00경), 편도1차선 도로, 혈중알콜농도 0.07%의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, 적재함에 야광표시판을 설치하지 않고 진행하여 가는 경운기 추돌한 사안. 경운기 운전자의 과실 30% | 30% | 대전지법 95나4450 |
| 저녁(18:35경), 편도1차선, 야간에 아무런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리어커를 끌고 길가 노견쪽이 아닌 차도 가운데를 통행한 잘못이 있다 하여 피해자과실 35% 인정 | 35% | 서울지법 9 5 가 단 177273 |
| 피해자의 불법주차된 차량(승용차)이 피고 견인차에 의해 견인되어 가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달려가 차량정지신호를 받고 일시정차중인 견인차의 운전석쪽 창문을 붙잡고 있다가 견인차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10km로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놓지 아니한 채 따라가다가 추락하여 부상한 사안. 피해자과실 70% | 70% | 서울지법 94나16884 |
| 피고 경운기 시속 5km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좌회전, 원고는 뒤에 2인 태우고 오토바이로 직진, 좌회전 도로는 폭이 좁은 도로, 원고는 시속 25km, 원고과실 50% | 50% | 서울고법 86나2567 |
| 경운기 5km로 좌회전하다 직진해 오는 오토바이 받음, 오토바이 시속 25km, 오토바이 뒤에 원고 A 동생 오토바이 앞에 7세된 원고 B 안전모 안쓰고 운전수 C 와 탐, 원고들 과실 A 30% B 40% C 50% | 50% | 서울고법 86나2576 |